예 산 총 칙

202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373,904,983	71,217,149
일반회계	2,195,133,985	65,854,020
특별회계	178,770,998	5,363,130
기타특별회계	178,770,998	5,363,130
공유재산관리	33,857,744	1,015,732
의료급여기금	11,544,092	346,32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29,658	890
교통사업	41,238,533	1,237,156
철도건설사업	57,020,049	1,710,601
폐기물처리시설	18,326,601	549,798
도시개발	5,016,913	150,507
공공시설등 설치	313,739	9,412
문화시설건립	919,837	27,595
도시재생	8,294,206	248,826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2,208,826	66,26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800	24

- 제 2 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 제 3 조 2024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 제 4조 2024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 제 5조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811,812천원으로 한다.
 - (1) 일반예비비 2,811,812천원
 -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00천원
 - (3) 내부유보금 0천원
- 제 7조 2024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9,7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